

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확정

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503-9241

◇ 주요 내용

- 재정경제부는 금융기관 및 예금자의 도덕적 해이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예금보험기금을 확충하기 위하여
 -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'98.7.1부터 시행하되 예금원리금 보장범위를 축소하고 보증보험을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은 '98.8.1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.

<<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>>

◇ 예금원리금 보장범위 축소

- '98.8.1 이후에 새로 가입하거나 입금된 예금에 대해서는 2천년말 이전에 금융기관이 지급정지되거나 파산하는 경우
 - 예금자 1인당 2천만원 이상의 예금은 원금만 보장하고
 - 2천만원 미만의 예금은 원금과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 수준을 고려하여 예금보험공사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금리수준의 이자를 보장함.
- '98.7.31 이전에 가입한 예금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대로 2천년말까지 원리금 전액을 보장함.

◇ 보증보험을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

- '98.8.1 이후 가입한 보증보험계약을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
- '98.7.31 이전에 가입한 보증보험계약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2천년말까지 예금보호대상에 포함

◇ 은행 또는 증권회사가 발행한 RP를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

- '98.7.1 이후 은행 또는 증권회사가 발행한 RP를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
- '98.6.31일 이전에 은행 또는 증권회사가 발행한 RP는 기존과 같이 2천년말까지 예금보호대상에 포함

◇ 예금보험요율 인상

- 금융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함에 있어 금융기관 스스로의 부담을 확대하기 위하여
- 금융기관들이 매년 예금액의 일정비율을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는 보험료의 요율을 법상한도까지 인상

(단위 : %)

	현행	개정안	법상한도
은행	0.03	0.05	0.05
증권	0.1	0.1	0.1
보험	0.15	0.15	1
종금	0.12	0.15	0.15
금고	0.15	0.15	0.15
신협	0.06	0.15	0.15

<참고>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후 보호대상예금 종류

○ 보호대상예금

- 공통 : 개인, 법인예금
- 은행 : 예금, 적금, 부금, 표지어음, 원본이 보전되는 신탁상품*1, 외화예수금, CD, 개발신탁, 은행발행채권
- 증권회사 : 고객예탁금, 증권저축
- 보험회사 : 개인보험계약, 법인보험계약
- 종합금융회사 : 발행어음, 표지어음, 담보부매출어음(보증어음), CMA
- 상호신용금고 : 계금, 부금, 예금, 적금, 표지어음
- 신용협동조합 : 출자금, 예탁금, 적금

○ 보호대상 제외예금

- 공통 : 차입금(콜 포함)
- 은행 : 원본이 보전되지 않는 신탁상품, RP*2
- 증권회사 : 제세금예수금, 증권사발행채권, 수익증권, RP*2
- 보험회사 : 재보험계약, 보증보험계약*3

- 종합금융회사 : 무담보대출어음, 외화차입금, 수익증권, RP, 종금사발
행채권

*1 개인연금신탁.노후생활연금신탁.근로자퇴직적립신탁 등

*2 '98.6.31 이전에 은행 및 증권회사가 발행한 RP --> 2천년말까지 한
시적으로 보호, '98.7.1 이후에 은행 및 증권회사가 발행한 RP -->
보호대상에서 제외

*3 '98.7.31 이전에 보증보험회사와 체결한 보증보험계약 --> 2천년말
까지 한시적으로 보호, '98.8.1 이후에 보증보험회사와 체결한 보증
보험계약 --> 보호대상에서 제외